

서울마포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 모집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에 의거 「서울마포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2. 1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운영시설 현황

- 가. 시 설 명 : 서울마포지역자활센터
-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3층
- 다. 현 종사자수 : 12명(센터장 포함)

2. 운영사업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자활근로사업
- 나.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3. 운영방식 :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

4. 신청자격

- 가.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 위반으로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등기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운영조건

가. 종사자 고용 승계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사무 승계

나.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2.15.(월) ~ 3.16.(화)

나. 접수기간 : 2021. 3. 5.(금) ~ 3.16.(화)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마포구청 생활보장과(6층)

※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며(09:00~18:00) 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

7.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름)

가. 「서울마포지역자활센터 변경지정 운영주체 선정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름

나.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

다. 신청법인(단체)가 없거나 1개 단독 신청할 경우 재공고 실시(5일 이상)하고, 재공고 결과 1개 법인(단체) 신청시 심사결과 해당 법인이 70점 이상 받으면 선정

8. 심사발표

가. 심사일시 : 별도 안내

나. 선정결과 :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 게시 및 개별통보

9. 제출서류

가.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서식1)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사본 각1부
(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 등록증, 단체회칙 또는 규약 사본 각1부)

다. 마포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각1부
(이사회가 없는 단체의 경우 총회 소집통지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각1부)

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서식2)

① 신청법인(단체) 일반현황 및 사업현황

② 서울마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내정자 이력사항(서식2-1,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 센터장(내정자) 자격요건 : 2020 자활사업안내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적용

직 급	자격기준
1급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지닌 자 2. 8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10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급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사업 등)

※ 해당업무 관련 자격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 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기관 관련사항 : 고유목적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 책임자 및 실무수행인력의 경력,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 관련 실적
- 자활센터 운영계획 : 예정 사업내용, 인력운용계획, 자활센터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계획
- 사업별 세부계획 : 사업실시 배경(지역사회 조사결과 등), 사업내용, 사업별 예상 매출액 및 수익금과 자활기업 발전가능성에 대한 진단,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 기대효과 등
- 예산안(세부사업별 예산포함) :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 기타 자료(위 내용의 별첨, 별지 자료)

마. 면접심사 발표자료(PPT/ 10분이내/ 담당자 이메일 joyfullsg@mapo.go.kr 제출)

바. 서약서(서식3)

사.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또는 동의서(서식4)

(※제출대상: 센터장 내정자, 법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임원 등)

10.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1권으로 편철하여 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

- 편철순서 : 지정신청서, 법인관련 자료, 심사의뢰서 순으로(제출서류 가~라) A4용지로 편철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기재, 목차에 따라 구분 견출지 부착
- 제본책자 파일, 면접심사 발표자료(제출서류 마) : 이메일(joyfullsg@mapo.go.kr) 제출
- 서약서 및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또는 동의서(제출서류 바~사) : 원본 별도 제출

11. 기타사항

- 가.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 나. 제출된 서류는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라. 신청법인(단체)은 관계규정 및 신청 자격조건, 현지여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법인(단체)의 책임임
- 마. 신청법인(단체)은 심의당일(추후통보)에 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지역 자활센터 운영계획 등 설명(10분 이내)
- 바. 마포구 자체심사로 선정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결정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가능
-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02-3153-6482)로 문의 바람